

제134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816
----------	-----

2010. 2. 2.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11. 25. 윤 호 영 의원 외 4 인
- 나. 회부일자 : 2010. 1. 26.
- 다. 상정일자 : 2010. 2. 2.

2. 제안설명

- 가. 제안설명자 : 윤호영 의원
- 나. 제정사유

일반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의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2)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관련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3) 관할구역과 구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 4) 불용의약품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5)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 폐기하고 올바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구성은

- 제1조 목적을 포함 총 7개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
- 제4조 와 제5조는 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 하는 사항과 관할구역 내에서 폐의약품을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구민은 불용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내의 약국의 약사 또한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를 하고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규정과, 약사회장은 광진구 관내의 약국에 불용의약품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처리할 때까지 보관하며,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을
-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관리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현재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상의 산업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등의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어 토양 및 하천에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가정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이 시달(2009.2)된 사항이며, 그 내용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고 행정지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거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위탁업체에서 소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 없음

5. 토 론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